

- 일 시 : 2021. 5. 25.(화) 11:00
- 장 소 : 온라인(비대면)

2021년 5월 통장 월례회의 자료



가정2동

『2021년 5월 통장 월례회의 자료 목차』

주요 홍보내용 (33건)	페이지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3,4
②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5
③ 혼인신고 축하기념 포토존 운영	6
④ 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7
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안내	8,9
⑥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10
⑦ 2022년 태양광,태양열,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사업 수요조사	11
⑧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오픈 기념 이벤트 안내	12,13
⑨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주요내용 안내	14
⑩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15,16
⑪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17,18
⑫ 2021년 5월중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19
⑬ 개방주차장 지정사업 참여 선정	20
⑭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1
⑮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22
⑯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23
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24
⑱ 공공심야약국 운영	25
⑲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안내	26
⑳ 서구청소년시설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27,28
㉑ 2021년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29
㉒ 인천e음 현장서비스 '너나e음' 사용안내	30
㉓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	31
㉔ 현충일에 조기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일 기립시다.	32
㉕ 장애인등록 대상질환 확대	33,34
㉖ 인천 서구 출산장려지원사업 안내	35
㉗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	36
㉘ 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	37
㉙ 주거급여 사업 안내	38
㉚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39
㉛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신청 안내	40
㉜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41
㉝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간 아동교육프로그램 안내	4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자연사레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좀 더 쉽고 편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개시일시 : 2021. 4. 28.(수)

내 용 :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정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시스템

대 상 : 본인, 14세 미만 자녀 [추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확대 예정]

신청방법 : **정부24 접속 후 본인 직접 조회**

[디지털약자(노인 등)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가능]

○ (P C) 정부24(www.gov.kr) > 로그인 > 보조금24 > 나의 혜택 바로가기

○ (모바일) 정부24 어플 다운로드 > 로그인 > 보조금24 > 자세히보기 > 나의 혜택 바로가기

문 의 : 서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전략관리팀 (☎560-1914)

【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 560 - 1914 】

혼인신고 축하기념 포토존 운영

□ 혼인신고 축하기념 포토존 운영

- 위 치: 서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실 내 가족관계등록창구 앞
- 이용대상: 혼인신고 민원인 및 민원실 방문 고객
-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 이용방법
 - 삼각대, 셀카봉 등을 이용하여 포토존에서 자유롭게 사진 촬영
 - 신랑, 신부 이미지의 '서동이' 피켓과 부케 등 무료 사용
 - 요청 시 직원이 사진 촬영 협조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560 - 3202 】

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단, 유흥·향락, 도박·사행업종 제외

□ 감면내용

- 감면세목: 재산세 7월·9월(건축물, 토지)(2021년도 한시적)
※ 재산세 7월 건축물분 감면 후 남은 금액 재산세 9월 토지분에서 감면
- 감면기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하여 감면(200만원 한도)
- 인하임대료 적용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1. 5. 10. ~ 6. 30.
- 신청방법(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 팩스 : (서구청) 032-560-2722(수신확인 문의: 032-560-4200~7),
(검단출장소)032-718-1508(수신확인 문의: 032-718-1520)
 - 방문 : 인천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검단출장소 재산세팀
 - 우편 : (서구청)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 세무1과 재산세팀
(검단출장소)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 검단출장소 재산세팀

□ 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류) 등

【 부서명 : 세무1과 ☎ 560 - 4206 】

-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5. 10. ~ 5. 28.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 접속)
- (현장신청) 2021. 5. 17. ~ 6. 4.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5.)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복지원제외: 기초수급(생계급여/5월), 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금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1회 지급(계좌입금)

신청서류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소득감소 비교시점)

-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② '19년('20년)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③ '19년, '20년 동월 등 신청인 선택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본인 작성 제출

문의 : 서구청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560 - 4294】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신청기간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 5. 10.(월) ~ 5. 28.(금) 22:00

출장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 읍면동 방문 신청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 ~ 5. 28.(금)

복지로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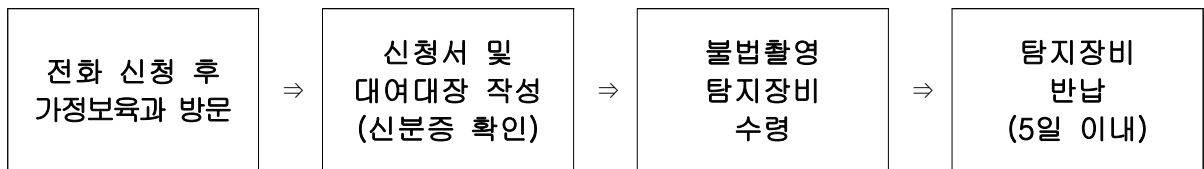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 탐지장비 대여 지원

- 추진기간 : 연중
- 대여대상
 - 다중이용시설(숙박업소, 영화관, 병원, 상가, 식당, 노래방 등) 민간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
 - 각종 공익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
 - 개인(구민 전체)
- 대여기간 : 5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 대여장비 : 1개소 당 1세트 (전파탐지기+렌즈탐지기)
- 대여방법 : 전화 신청 후, 신분증 지참 방문 대여



- 문 의 : 서구청 가정보육과 (☎ 032-560-5737)

【 부서명 : 가정보육과

☎ 560 - 5737 】

2022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
 - 사업지역: 서구 전 지역
 - 지원대상: 공공건물, 민간건물[주택, 일반(상가, 공장, 교회 등)]
 - 지원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신재생에너지)
 - 사업규모: 약 3,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단독주택 태양광 3kW 설치 시 자부담: 93만원
 - 일반건물(상가, 공장, 교회 등) 태양광 1kW 당 자부담: 33만원
- * 2022년 사업단가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3. 1.(월) ~ 6. 21.(월) 18시 (예정)
- 전화신청: JH에너지 070-4713-0690 (수요조사 업체)

【 부서명 : 기후에너지정책과 ☎ 560 - 4462】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오픈 기념 이벤트 안내

❖ 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 및 상수도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포인트로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참여방법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직접 회원가입
- 방문신청 : 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 팩스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032-560-2759) 팩스 송부

□ 포인트 산정방법

-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같은 월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 확인
(단, 과거사용량이 없을 경우 가입 후 1년간 사용량 또는 표준사용량 적용)
- 반기별 전기, 상수도 온실가스 감축률별 포인트 정액 부여

구 분	온실가스 감축률			비 고
	5%이상~10%미만	10%이상~15%미만	15%이상	
전 기	반기 5,000포인트	반기 10,000포인트	반기 15,000포인트	1포인트당 1원
상수도	반기 750포인트	반기 1,500포인트	반기 2,000포인트	
도시가스	반기 3,000포인트	반기 6,000포인트	반기 8,000포인트	

□ 인센티브 지급

- 연 최대 50,000원 (최대 25,000원/1회)
- 지급시기 : 6월, 12월 (연 2회)

【 부서명 : 기후에너지정책과 ☎ 560 - 3304 】

cpoint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오픈 기념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1년 5월 17일(월) ~ 6월 25일(금)



모바일로 접속 가능

cpoint.or.kr

탄소포인트제의 모바일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방법



1 신규 가입

- ▶ PC 또는 모바일 접속 후 회원 가입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필요)
- ▶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쿠폰 지급



2 친구 추천

- ▶ 신규 회원가입 추천 (신규 가입 시 추천인 ID 입력)
- ▶ 추천을 가장 많이 한 30명에게 상품권 지급

경품지급



신세계 5만원 상품권(30명)



커피 쿠폰(500명)

당첨자 발표

2021년 7월 14일(수) 예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가-개시일 시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cpoint.or.kr>)

※ 당첨과 상품권은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전화

Tel. 032-590-3420, 3426, 3433, 3445



한국환경공단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관련 주요내용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기준」 과 「가구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규대상 예정자에게 6월 초부터 우편 및 문자 안내를 할 예정
(2021년 4월 27일 기준 서구 신규대상 예정자는 총 1,491명)

○ 지원내용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계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하절기 : 2021.07.01.(목)~09.30.(목), 동절기 : 2021.10.06.(수)~2022.04.30.(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05. 21(금) ~ 2021. 12. 31(금)** * 하·동절기 통합 1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부서명 : 기후에너지정책과 ☎ 560 - 4464】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 대형폐기물이란 ?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침대, 장롱, 책상 등의 가구류와 거울, 자전거, 시계 등의 생활 용품류
 -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 방법
 - 불연성(녹색) 봉투 : 5·20·50리터 / 폐전구, 깨진 거울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일반쓰레기(흰색 봉투) 배출일에 배출
 - 가정사업계용(황색) 봉투 : 30·60·125리터 / 신발, 이불, 목재 등 불에 타는 쓰레기 / 2개 이내 배출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 요청, 3개 이상 배출 시 (주)영보산업 032-572-3220 수거 요청

□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붙임 품목별 가격 안내문 참조)
 - 배출자가 직접 종량제 봉투 판매소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 ※ 최근 스티커 분실 및 배출자 외 스티커 수수료 수수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바코드 또는 인증번호를 통해 구입자 등 배출정보 확인 가능 유의
 - ※ 훼손 스티커 부착 또는 배출자보관용 스티커 미보관 시 수거 불가 유의
- 대형폐기물 배출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동별 수거요일 전날 20:00 ~ 24:00 집앞에 배출
 - 동별 수거요일

수거요일	동 명
월요일	심곡동, 청라2동, 청라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원당동
화요일	석남1동, 석남3동, 가좌3동, 불로동
수요일	석남2동, 가좌4동
목요일	연희동, 공촌동, 가정1동, 당하동
금요일	검암경서동, 가좌2동, 백석동, 마전동, 금곡동, 대곡동, 왕길동, 오류동
토요일	청라1동, 가정2동, 가정3동

□ 대형폐기물 수거관련 문의 : (주)삼원환경 032-820-7330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560-4553 】

대형폐기물 품목별 가격표

문 의 : 시구청 자원순환과 032-560-4553
수거문의 : (주)삼원환경 032-820-7300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표

(※ 소형 폐기전제품 : 동행정부지센터 / ※ 대형 폐기전제품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에서 무상수거)

품명	규격	금액	품명	규격	금액	품명	규격	금액	품명	규격	금액	
가스오븐레인지	1m 미만	2,000	서랍장	5단 미만	6,000	액자	소(대각선 0.5m 미만)	2,000	침대(베트라스)	유아용 침대	3,000	
	1m 이상	4,000		5단 이상(3단영수 포함)	8,000		중(대각선 1m 미만)	3,000		1인용	8,000	
가스히터	모든규격	5,000		아용실, 금은방용	10,000		대(대각선 1m 이상)	5,000		2인용	9,000	
거울	반신거울(소)(1m 미만)	2,000	소파	유아용	3,000	여행용가방	소(기내용)	3,000	침대메트판	플라스틱(계당)	2,000	
	반신거울(대)(1m 이상)	5,000		스포티타이블	3,000		대(화물용)	5,000		나무(계당)	5,000	
고무รอง	대	5,000		보조스파(스툴)	5,000	욕물자석베트	모든규격	11,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골프가방	모든규격	5,000		1인용(계당)	5,000	운수베트	1인용	9,000	침대틀	1인용	3,000	
가터(악기)	모든규격	3,000		2인용(계당)	6,000	2인용	10,000	2인용(큰사이즈 포함)		4,000		
난로	석유	4,000		3인용(계당)	10,000	육조	모든규격	10,000		유아용 침대	5,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4인용(분리불개)	11,000	우산	모든규격	1,000		2층침대틀	10,000	
다용도 수납장	전자렌지, 생활용	4,000		4인용(2인용 두개)	12,000	유리(쪽양)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물침대(물포함)	12,000	
뚜치리	모든규격	5,000		커우치	10,000		대(120cm이상)	5,000		모퉁용	12,000	
	마작대자리(2인이상)	10,000		소화기	3.3kg 이하	3,000	강화유리(서빙부스 캔터 등)	10,000	카펫	소(길이1.5m 미만)	5,000	
레인지후드	모든규격	2,000	10kg 이하		5,000	유모차, 보행기	모든규격	3,000		중(길이2.5m 미만)	7,000	
마네킹	반신용(머리 포함)	3,000	20kg 이하		7,000	유아용 전동차	모든규격	5,000		대(길이2.5m 이상)	12,000	
	전신용	5,000	수도호스	10미터 당	1,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규격	4,000	할라베스	모든규격	2,000	
문갑(거실장)	모든규격	6,000	수족관(어항)	소(1m이하)	3,000	의자	모든규격	4,000	캐비닛	모든규격	5,000	
	문갑(거실장)	물문갑		10,000	중(1.5m이하)		5,000	자전거	자전거(유아용)	3,000	고양이 타워	소(높이 1.5m 미만)
문턱	유리(부착문갑)	10,000		대(1.5m초과)	8,000	자전거(어린이)	4,000		타이어	대(높이 1.5m 이상)		10,000
	문틀	목재	4,000	스탠드복사기	모든규격	5,000	자전거(달반)			5,000	800mm 이상	5,000
문틀		철재	5,000	스키	모든규격	3,000	장롱(쪽양)		프레임(틀)	5,000	1,100mm 이상	12,000
	문틀	소(높이 1.6m 미만)	3,000	식탁	6인용 미만(의자 별도)	6,000		너비 90cm 미만	8,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대(높이 1.6m 이상)		5,000	6인용 이상(의자 별도)			7,000			너비 80cm 이상 ~ 120cm 미만	10,000	탁자	10인용 미만
물탱크 (FRP제외)	2.5톤 미만	30,000	식탁(물, 대리석)			10,000			너비 120cm 이상	11,000		테니스라켓
	2.5톤 이상	50,000	아일랜드(나무)			10,000	소(길이 60cm 미만)		4,000	렌트	가정용	
바독판	소(얇은 판)	1,000	아일랜드(대리석)	15,000	장식장, 진열장	중(길이 90cm 미만)	6,000	필레트(나무)	모든규격	5,000		
	대(두꺼운 판)	2,000	신발장	소(높이 1.5m 미만)		3,000	대(길이 90cm 이상)	8,000	폴리베트	3.3㎡(평)/당	8,000	
발상	다과상	2,000		대(높이 1.5m 이상)	6,000	장판	5m 미만	4,000	피아노	전자피아노 소형	6,000	
	소(1.2m 미만, 4인용 미만)	3,000		실내용통기구	자전거(플라스틱)		5,000	5m 이상		5,000	일반(악라케트, 전자피아노)	11,000
방충망	대(1.2m 이상, 4인용 이상)	4,000	스피닝 자전거(금속류)	10,000	재봉틀	소	3,000	대형(그랜드)	소(40cm 미만)	3,000		
	소(창문)	3,000	소(1m 미만)	4,000		전기장판	대		5,000	중(70cm 미만)	4,000	
벤치	대(문)	4,000	대(1m 이상)	6,000	창문		모든규격	6,000	대(70cm 이상)	5,000		
	모든규격	5,000	상부장(플랜징, 후드)	5,000		책상	모든규격	3,000	형탁(서랍없는)	모든규격	2,000	
병통	모든규격	5,000	실링팬(전통)	모든규격	5,000		환풍기	가정용		6,000		
보드	모든규격	3,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상판	3,000	업소용	10,000	
	부츠	모든규격			3,000		중(길이 1m 미만)		3,000		환	가정용
블라인드		쪽양			5,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책상(책꽂이)	편수(의시합, 무서합)	6,000		환풍기
	텔레전(대형형광등)	모든규격	3,000	안나카운터 (데스크)	중(가로 1.5m 미만)	8,000	왕수(양시합)		7,000	환풍기	업소용	
텔레판		모든규격	2,000	대(가로 1.5m 이상)	10,000	사무용	10,000	환	가정용		2,000	
	사무용전력해리선	모든규격	5,000	연마의자	모든규격		10,000		3단 미만	5,000	환풍기	업소용
세면대		모든규격	5,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3단 이상	6,000	환풍기	업소용		3,000
						환탁(책꽂이)	가정용	6,000				
						천막	가정용	6,000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들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로를 준용하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길이는 긴 면을 기준으로 한다.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 배출방법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여 문전배출

-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납부필증을 붙이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비닐봉투 등 이물질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

- 개별수거용기 : 2리터, 3리터, 5리터
- 공동수거용기 : 60리터
 - ※ 공동수거용기는 최소 5세대이상 동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급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소 안내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전화번호 : 032-580-1180, 홈페이지 : www.issi.or.kr/clean)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반드시 사유지 내에 보관

- 용기를 인도 및 도로에 방치하면 분실 또는 파손될 수 있으며, 무단투기 및 악취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560 - 4414】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안내]

구 분	배출구분	물질내용	배출요령
채소류	일반쓰레기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 씨, 고추대, 마른마늘대, 옥수수대의 껍질, 양파껍질, 생강껍질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김장쓰레기	1차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 : 배추, 무 등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1차 가공(절임)을 한 상태 : 배추, 무 등		(기간: 10월 중순 ~ 12월말까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과일류 (견과류 포함)	일반쓰레기	호도, 밤 등의 껍데기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앗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굴껍질,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부피가 큰 과일 등의 껍질)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곡류	일반쓰레기	왕겨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육류	일반쓰레기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내장, 비계, 살코기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어패류	일반쓰레기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복어의 내장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독성물질 함유로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생선내장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의 알(껍질)	일반쓰레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기타	일반쓰레기	한약찌꺼지, 각종차(녹차 등) 찌꺼기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 고추장의 장류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2021. 5월중 교통안전 테마캠페인

2021. 5월중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스쿨존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스쿨존 안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스쿨존은 안전존입니다.

* 출처 및 참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준수’ □ 스쿨존 안전수칙!!



스쿨존운전자 안전수칙

-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서행
- 스쿨존 내 불법-정차금지
-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기
- 정지선 잘 지키기
- 후진 시차에서 내려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린이들의 보행 관점을 이해해보아요

- 무단횡단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모른다.
- 눈에 보이는 자동차만 유일한 위험이라 생각한다.
- 자동차 운전자를 보고 자동차 형체를 사람으로 착각한다.
- 자동차의 전조등을 사람의 눈으로 착각한다.
- 반대편에 있는 친구를 보려고 순간적으로 무단횡단을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부터 시행)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현행 8만원 → 12만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현행 9만원 → 13만원

- 교통사고 없는 교통안전도시 안전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초은초등학교 최규민

좋은 서구, 흥분복권 서구, 흥행하는 서구!

【 부서명 : 교통정책과 ☎ 560 - 4853 】

개방주차장 지정사업 참여 신청

공민 서구
행정복지 서구
건강하게 서구



모두에게 ÷ 모두에게 + 개방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받으세요!

- + 신청기간 : 2021년 3~12월
- + 신청자격 : 부설주차장이 있는 서구 소재
건축물(종교시설, 상가, 아파트 등) 소유자(최소 5면 이상)
- + 지원내용 : 시설비 등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무료지원:2천만원 / 유료지원:2천5백만원)
- + 진행절차 : 신청 ▶ 검토 ▶ 협약 ▶ 개방
- + 접수/문의 : 032)560-0838(주차관리과)



인천광역시 서구

【 부서명 : 주차관리과 ☎ 560 - 1963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 ❖ 아파트 내 주민 부대 ·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단지내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996. 6. 8일 이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지원기준 : 아파트 내 부대 ·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을 각각 전체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 ※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사전 득한 경우

- 선행절차 :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서 선임한 관리 사무소장이 전체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위허가 (용도변경)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허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 주차구획 1면당 최대 50만원 [단지당 최대 2,000만원]

○ 지원내용 : 주차구획 및 노면표시, car stopper, 부대시설과의 경계표시 (경계석, 조경 등), 조명시설, 방범시설 비용

【 부서명 : 주차관리과 ☎ 560 - 1963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가칭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출입구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였으나,
- 2021년 7월 13일부터 「주차장법」의 개정·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설치된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현황

- 위 치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설치된 모든 노상주차장
- 규 모 : 총 23개소, 약 872면

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개소	면수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23	872	9	334	6	216	8	322

폐지방법

- 예 시



- 향후계획 : 2021년 6월까지 노상주차장 폐지 예정

【 부서명 : 주차관리과 ☎ 560 - 3222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 취지 및 목적

-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 요청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세부사항

- 과태료 상향 :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
- 시행일자 : 2021. 5. 11.부터
- 과태료 금액 변경
 -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13만원)
 -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14만원)
- ※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함
- 주민 홍보 방안
 - 정례반상회 자료 제출
 -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단속 구역에 홍보 현수막 게시
 - 행정복지센터 관용차량에 홍보물 부착

【 부서명 : 주차관리과 ☎ 560 - 5945 】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 서구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한의학 난임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난임여성 44명(사실혼 포함)
 - 대상자 선정 : 한의사회와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내용 : 3개월간 첩약 지원(120만원/1인)
 - 필요시 침구치료는 본인부담
 - 인천광역시 한의학 난임치료 가능 지정한의원 : 79개소(서구 16개소 포함)
- 지원장소 : 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 정액검사결과지, AMH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등본 각 1부 등
(각 서류는 최근 5년 이내 검사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것)
- 문 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718-0434, 718-0435)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718-0434 】

공공심야약국 운영

배경

- 심야 및 휴일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의약품 구입 불편 제거
- 약국 외 안전상비의약품(13품목) 판매제도 시행으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가 제공되고 있으나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 사례발생으로 취약시간대 전문약사의 복약지도 필요

내용

- 365일 심야시간에 의약품 판매 및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기간

- 2021년 1월 ~ 12월 연중

대상

- 1개소(성모약국)
-서구 원창로 174, 102~103호 (신현동, 남송프라자)

*운영 약국 확대 예정(경서동, 당하동 등)

운영시간

- 22시 ~ 익일 03시

【 부서명 :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718 - 0424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안내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열이 자리 잡는 시기의 아동들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의 예방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안내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5학년

- 교육청 수요조사 우선 참여 학교 및 학생 현황

: 가석초, 청일초, 왕길초, 도담초, 석남서초, 청람초(6개교 481명)

○ 지원기간 : '21. 5. 17. ~ '21. 11. 30.(7개월)

※ 6개교 외 학생은 5월 26일부터 덴티아이 앱을 통해 학생등록 후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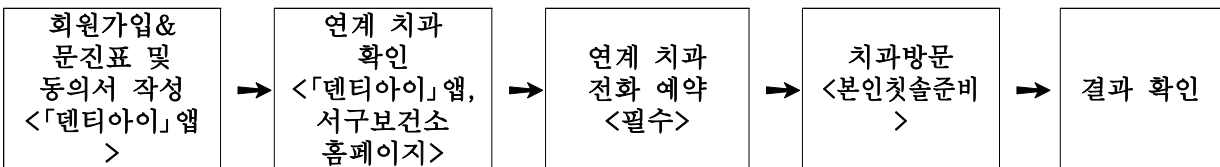
- 참여 치과의원 연계,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구분	세부내용
구강검진	문진, 시진, 치면세균막 검사(disclosing agent 사용),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관리(칫솔,치실질 포함),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금주 등
예방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는 주치의 소견상 필요시에 구강상태에 따라 선택 적용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용 절차



※ 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덴티아이” 검색

※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에서 서면작성 가능

※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학생등록 가능

【 부서명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718 - 0503 】

서구청소년시설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운영일정

구 분	서구청소년센터	
사 업 명	텔레이 원데이 클래스	테마가 있는 봉사학교 (2차) 하천 살리기편
일 시	2021. 7월 중 (상의 후 결정)	2021. 7. 1(목) ~ 7(수)
장 소	서구청소년센터 및 활동터전	온라인, 각 활동터전
대 상	서구 관내 청소년 14~24세 3팀 (개인 또는 단체)	관내 9~24세 청소년 100명 내외
접수기간	6. 1(화) ~ 30(수)	6. 8(화) ~ 22(화)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및 강의계획서 작성 후 방문, 팩스, 이메일 (※선착순 접수)	인천서구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참 가 비	무료	무료
내 용	자신의 취미, 특기, 전공, 경험들을 살린 청소년 일일 온라인 강사활동 등	EM흙공 만들기, 하천 주변 환경정비 등 활동 영상 제출 (*봉사시간 지급)
연 락 처	Tel) 577-7979 Fax) 571-6473 e-mail) sg youth7979@naver.com	Tel) 577-7979 Fax) 571-6473 e-mail) sg youth7979@naver.com

【 부서명 : 서구청소년센터 ☎ 577 - 7979 】

서구청소년시설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운영일정

구 분	서구청소년센터	가좌청소년센터
사 업 명	제14회 서구 청소년어울림마당 (2차) '떡캉스'	청소년 환경가드 「일회용품 줄이기 일주일 챌린지」
일 시	2021. 7. 17(토)	2021. 4. 7(수) ~ 6. 30(수)
장 소	비대면 온라인 운영 유튜브채널 '서구청소년올리고TV' & Zoom접속	온라인 및 각 활동터전
대 상	관내 초·중·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 누구나	9~19세 청소년
접수기간	5. 24(월) ~ 7. 3(토)	2021. 4 ~ 6월 (※학교별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여부 사전 확인 필요)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QR코드 접수) 및 이메일 접수	1. e-청소년을 통한 봉사활동 신청 2. 네이버 밴드(인천서구청소년올리 고) 가입 3. 세부 활동 안내 확인 후 인증
참 가 비	무료	무료
내 용	메인행사 '요리를 멈추지마', 동아리공연, 체험부스 등	일회용품 줄이기 챌린지 및 활동 수기 작성
연 락 처	Tel) 577-7979 Fax) 571-6473 e-mail) sgyouth7979@naver.com	Tel) 580-1190 Fax) 580-1195 e-mail) gajwago@naver.com

【 부서명 : 서구청소년센터 ☎ 577 - 7979 】

【 부서명 : 가좌청소년센터 ☎ 580 - 1190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19. 01. 01. 00시 ~ 2021. 12. 31. 24시(매년 갱신)
- 보험료 : 인천광역시가 일괄 납부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참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보험사에 문의)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장항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대중교통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2021년 신규)	인천시민이 전세버스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021년 신규)	인천시민이 전세버스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강도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인천시민이 강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인천시민(만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2019년 내 발생사고 보험창구 : DB손해보험(주) ☎1522-3556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 ☎440-5737】

인천e음 현장서비스 ‘너나e음’ 사용안내

이제 우리 동네 모든 NH농협은행에서 인천e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도**, 스마트폰이 **없어도**, 내 명의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인천에선 너도e음! 나도e음! 우리 모두 「인천e음」

너나e음이 무엇인가요?

인천e음 사용을 희망함에도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 농협에서 **신규발급, 잔액충전, 충전취소**를 할 수 있는 **현장서비스**입니다.
(※ 단, 충전취소는 당일 충전금액에 한해서만 가능)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인천시 관내 **전 농협은행 지점(41개점)**에서 가능합니다

적립된 캐시백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적립된 캐시백 인센티브는 **다음 결제시, 자동사용됩니다.**

인천e음 사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래내역, 충전잔액, 캐시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440-4811】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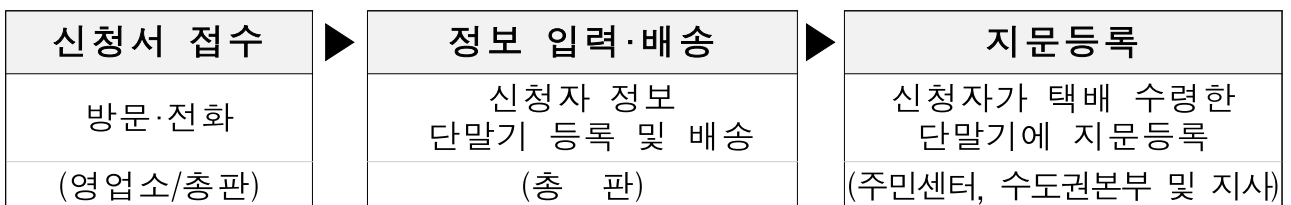
- ① 신청기간 : '21. 4. 1. (목)부터 선착순 신청
- ② 지원대수 : 4,200대 * 전년도 3,387대 대비 증 813대
(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 가능성 있음.)
- ③ 신청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도로공사 장애인 감면단말기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제외
- ④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배 등) 제외
- ⑤ 신청방법

구 분		주소 및 위치	전화번호	신청방법
영(톨 업 개 이 소 트)	인천	인천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 (서운동 55-76)	032) 718-2190	방문
	남인천	인천시 남동구 음실로 117번길 32 (운연동 437-1)	032) 718-2191	방문
총 판	하이원	인천시 남동구 장자로 5번길 18-24 (장수동 780-9)	1899-6804	방문 또는 전화

- 접수 시 필요서류 : 단말기 발급 신청서, 이용약관 동의서, 통합복지카드 사본, 현 주소 등록지 증명가능 자료 각 1부

* 전화 접수 시, 관련 서류는 팩스(032-472-4536) 또는 메일(hione07@naver.com)을 통해 제출

⑥ 지원체계



* 단말기 배송비 3,000원은 신청자 본인 부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440-2968】

현충일에 조기(弔旗)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6월 6일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 [弔旗] 를 게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시다.

《 조기 [弔旗] 게양 방법 》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겁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겁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겁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등록 대상질환 확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99)

-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21.4.13. 시행)으로 그 동안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복시·투렛장애 등 12개 질환에 대하여 장애인정기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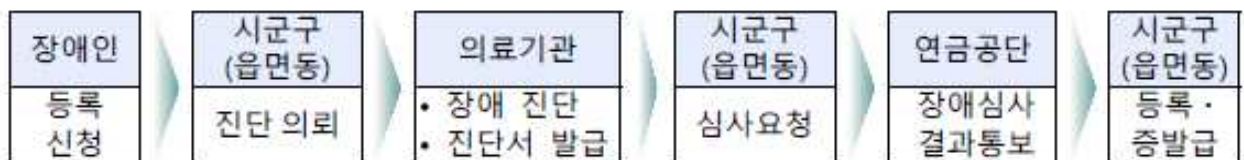
<장애유형별 확대질환>

구분	현행	개선	비고
1] 시각장애			
① 복시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2] 정신장애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심한장애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신설
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⑥ 강박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⑦ 투렛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3] 지체장애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4] 간장애			
① 간신증후군(합병증)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신설
② 정맥류출혈(합병증)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신설
5] 안면장애			
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기준 완화
6] 장루·요루장애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경우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경우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조정 가능

-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장애등록절차>



※ 문의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장애유형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장애유형	주요 내용
지체장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간장애	-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①난치성 복수, ②간성뇌증 2회 이상, ③간신증후군, ④정맥류 출혈, 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장루·요루장애	-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
정신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양성증상 또는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등록 심사시 구비서류>

장애유형	구분	주요 내용	
지체장애 (CRPS)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CRPS에 한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가능)	
	검사자료	골스캔 및 X-RAY 또는 CT	
	의무기록	CRPS 진단 당시 기록 및 장애진단 직전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시각장애 [검보임(복시)]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자료	동적복시 시야검사, 사시각 검사,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운동사진 등	
	의무기록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의무기록지	
정신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기면증, 투렛, 강박장애)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기질성 정신장애	기 시행한 뇌영상(CT 또는 MRI 등) 자료(발생 당시 자료 포함)
		기면증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등
		투렛장애	YGTSS 검사 결과지 등
		강박장애	진료기록지
의무기록	진단 당시 초진기록 및 진단 직전 2년 이상의 의무기록지		
장루·요루장애 (심각한 배뇨장애)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요역동학검사 등	
	의무기록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의무기록지 (수술 또는 시술 기록지 포함)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입양축하금, 산후조리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서구 출산·입양축하금, 산후조리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출산입양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입양축하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비 50만원 (서구지역화폐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서구지역화폐 사용가능) 		

○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 ※ 단, 19.7.1.이전부터 계속해서 휴직중인 경우 7월분부터 지급 가능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급신청서 (고용센터 발행) 필요 지원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이콜 **112**

★ 아래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육아 행동은 아동에게는 학대이며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첫째, 신체학대

때리지 마세요.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 및 체벌은 아동학대입니다.

둘째, 정서학대

마음이 아파요.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과 고함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등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행동은 아동학대입니다.

셋째, 성학대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넷째, 방임

엄마, 아빠 어디갔어요~



아동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양육환경(이혼, 생활고 등)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어떻게 보호 하나요?

- 아동과 그 보호자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
- ①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친인척 등)
 - ②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위탁
 - ③ 입양
 - ④ 아동복지시설 입소

상담·신청 어디서 하나요?

아동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18세(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	1,220,000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79만원)×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P 기본재산액(주거공제)액 : 대도시(13,500만원)/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부부가구	1,952,000	

□ 월 지급액

구분		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 ▶ 장애등급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종전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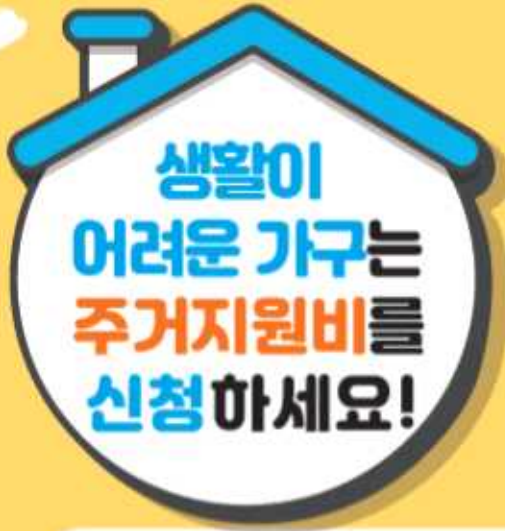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560-3069, 보건복지콜센터 129

☎ 기타 신청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였습니다. 신청 전 서류는 전화(560-3069) 확인 바랍니다.

주거급여 사업 안내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60,818	2,982,871	3,373,739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신청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포(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⑤ 통장사본
-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가구수	임차가구				자가가구			
	지원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400)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⑤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법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한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식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제주)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세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세가구 소득인정액 - 전세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신청 안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 지원대상**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 1946.12.31.이전 출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지원금액** 연 1회 8만원(인천e음카드 충전)
- 신청기간** 2021. 5. 3.(월) ~ 10. 29.(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어르신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 사 용 처** 인천 소재 건강관리, 위생관리, 여가, 전통문화 등 소상공인 관련 가맹점
- 사용기간** 지급(충전) 다음날부터 2021. 12. 31까지(미사용액 잔액 소멸, 이월불가)
- 문 의**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281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 사업종류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
본인저축	월 5 또는 10만 원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월 10만 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34,000원, 최대 627,000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295,000원, 최대 496,000원)	본인저축액에 1:3 매칭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지원 =14,400,000원+ a)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단, 전 차수의 신청·선발인원에 따라 현 차수의 최종 선발인원은 가감 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신청서
- (4대보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3개월분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소득신고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 (임시·일용직) 고용임금확인서

문의: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560-3069), 자립지원과 자활지원팀(560-5715)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아동교육프로그램 안내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에서는 저소득 · 위기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잠재능력, 창의력 개발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1. 3. 22. 부터 아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

○ 교육과정 및 일정

- 보드게임 : 매주 화요일 16:00 ~ 17:00
- 토탈미술 : 매주 월요일 16:00 ~ 17:0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기간 : 2021. 6. 14. ~ 12. 31.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교육장

○ 교육대상 :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

※ 신청서류 제출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 형제자매 동시신청 가능

○ 기 타 : 수강 및 재료비 무료, 수료증 발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5. 10. ~ 5. 31.

○ 신청방법

- 아동교육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으로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부득이 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아동지원팀 ☎032-440-8067)